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6년 12월 7일
- 제출자 : 거창군수(산림환경과)
- 회부일자 : 2006년 12월 8일
-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12월 13일(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 의안번호 : 제2006 - 73호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산림환경과장 이 태 우)

가. 제안이유

- 본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최근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 보상요건의 강화로 인하여 일부 농업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등 조례 운영상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 보상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피해 농업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피해보상 요건 완화 (안 제3조)
 - 현 행 ▮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30m² 이상
 - ↳ 총 피해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

원

- 개정(완화) :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될 경우에도 지원

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 종 목)

- 본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법령상 적정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2004년 10월에 의원 발의로 거창군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5년 10월 12일 의원발의로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통해 농작물 피해보상도 할 수 있도록 추가한 조례임.
- 동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 요건이 너무 강화되어 있어 일부 농업인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지난 2006년 11월 15일 제133회 군의회 업무보고시 피해보상 요건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농업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아주 시의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와 12월 6일 거창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